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1700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,
나. 71,000,000원 및 2024. 8. 20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2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오형석

별지